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4월 14일, 안상훈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6년 4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6. 9. 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법안심사제1소위(2026. 9. 1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6. 9. 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및 주요내용

(안상훈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거주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를 지원대상

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지원대상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 경제적 파탄 등으로 인하여 가구 구성원 전체가 현저히 곤란한 위기상황에 놓인 경우, 자살시도 등 심리적 도피를 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 전에 지원대상자 본인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음.

이에 지원대상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지원대상자가 제9조의2에 따라 발굴된 위기가구의 구성원인 경우 등에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격 확인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지원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복지 지원에서 소외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사회보장급여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덧붙여 지원대상자 또는 위기가구의 발굴 등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8조, 제40조 및 제53조의3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은호)

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는 사회보장급여의 직권 신청 및 정보 조회

「사회보장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기본 원칙으로서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제5조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도 친족, 「민법」상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등이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동의 없이도 직권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현행 제도에서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실제로 수급자격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면 급여 제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신속하게 지원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권신청 사유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추가적으로 현행법 제9조의2에 따라 발굴된 위기가구 구성원을 직권신청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직권신청 계획을 사전에 보장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직권신청 여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0조제6항에 따라 시·도사회보장위원회에 설치되는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려는 것임.

우선 개정안에 따라 직권신청 대상으로 추가되는 위기가구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자살위험, 정신건강 악화 등으로 인해 상담이나 신청 절차 자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안내만으로는 적시에 지원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발굴 이후 신속하게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다만, 현행 법체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동의 없는 직권신청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기가구라 하더라도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위기

정보의 종류에 따라 위기 정도에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가구라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동의 없는 직권신청을 허용하는 것은 지원대상자의 자기결정권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점에서 직권신청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단순히 위기가구로 발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는 직권신청을 허용하기보다는 자살 시도, 심리적 도피, 의사소통 곤란 등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나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직권신청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음으로, 개정안은 직권신청이 가능한 경우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회보장급여가 수급자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금융정보는 개인의 재산 상황과 경제활동을 보여주는 민감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수집과 이용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으로 볼 수 있음.

특히, 금융정보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한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이기는 하나, 그 범위가 넓고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에서 정보수집의 필요성과 침해의 최소성 간 균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신청 대상의 범위 및 정보의 이용 목적 등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직권신청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신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직권신청은 위기가구 발굴 이후 신속한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별도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할 경우 오히려 급여 제공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음.

특히, 실제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조사, 결정 및 사례관리는 대부분 시·군·구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 단위인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소위원회가 개별 직권신청 사안을 심의하는 방식은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음.

따라서 직권신청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되나, 그 방식이 사전 심의가 되어야 하는지와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 제8조제1항 단서에서는 ‘금융기관등의 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같은 조 제2항에서 ‘금융기관등’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나.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인센티브

현행 「공무원임용령」,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행정규제기본법」 등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 표창 및

포상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지원대상자 또는 위기가구의 발굴·지원 등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혜택 등을 부여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현행 법체계에서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임.

다만,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는 국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판단과 개입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적극행정과는 차별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음.

특히, 위기가구 발굴, 직권신청, 수급자격 확인 및 연계 지원 등의 업무는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해당 분야에서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하고 현장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서영석)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